

캘리포니아 주 공지

민사소송법 제 1179.04(a)

(2020년 9월 1일 현재,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9월 31일 사이의 1개분 이상 임대료 미납 세입자에게 2020년 9월 30일이나 그 이전 임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)

캘리포니아 입법부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COVID-19 관련 자금난을 겪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퇴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COVID-19 임차인 구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.

“COVID-19 관련 재정 문제” 는 아래 내용을 의미합니다.

1.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.
2. COVID-19 대유행 기간 중 필수 업무 수행 관련 직접 지출 비용의 증가.
3. COVID-19 대유행에 직접 관련된 건강 지출비용 증가.
4. COVID-19 대유행으로 발생한 어린이나 노인, 장애인 돌봄이 본인의 근로 수입을 제한함.
5. COVID-19 대유행에 직접 관련된 어린이나 노인, 장애인, 환자 가족 돌봄 비용 증가.
6. 기타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지출 비용 증가.

본 법안은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.

1. 상기 내용과 같이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8월 31일 사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, 본 미지급 건으로 인한 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상기 내용과 같이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1월 31일 사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,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간 미지급된 임대료의 25%를 지급하면 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귀하는 임대인에게 COVID-19 관련 재정난을 증명하여 COVID-19 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위증시 처벌이 발생할 것을 확인하는 신고서를

제출해야만 상기 퇴거 제한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 발생한 귀하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퇴거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, 임대인은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안내 및 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서 양식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.

귀하의 임대인이 2020년 미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거하여 귀하의 가구 수입이 임대물이 위치한 주 중위소득의 130% 이상이라는 소득 증빙을 가지고 있다면, 귀하의 임대인은 귀하에게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귀하의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임대인은 반드시 15일 전에 본 서류의 필요 여부를 공지해야 합니다. 고용주가 발송한 알림, 실업 보험 기록, 의료 영수증 등의 재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문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15일 전 통지 및 계약 이행 통지, 혹은 임대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15일 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안에 임대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, 퇴거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 발생한 임대료 미납액 중 최소 25%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2021년 2월 1일 퇴거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<https://lawhelpca.org/>를 방문하세요.

정보 및 리소스,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www.LandlordTenant.dre.ca.gov를 방문하시거나, 1-833-422-4255로 문의하세요.